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구미시장

### 2.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3조).
-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별표1).
-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5조).
-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제13조, 제14조).

-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2조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 환경부
  -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 : 환경부

#### 5. 검토의견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쇼핑센터·매장 등, 대중 이용업소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및 시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따른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본 조문 18조,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조례안 제정 준칙"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서
-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